

1. 개정이유

「수산업법」이 전부개정('22.1월 공포, '23.1월 시행)되어 동 규칙에서 인용한 해당 법률 조문 및 세부내용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그 간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함

2. 주요내용

- 가. 어구 사용량 초과 적제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안 별표)
- 수산업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사용 가능한 어구량을 초과하여 실은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근거 마련
- 나. 위반행위 보고 기관 명칭 명확화(안 제3조)
- 해양경찰청이 지자체에 위반행위 적발내용 송부 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해경 업무 체계에 맞는 보고 서류 반영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3. 6 .28 ~ 8. 0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에 대한 심사 예정

해양수산부령 제2023-000호

수산업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수산업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무원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에”를 “제2항 및 제3항에”로, “24시간 이내에”를 “지체 없이”로, “서류”를 “서류 및 제3항의 위반사건 발생보고서”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산업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발견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위반사건 발생보고서(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표 Ⅱ. 개별기준 제2호가목 52.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32. 제60조제1항에 따른 어업별 종류별 어구의 사용량(실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경우(어구 사용량이 기준의 2배를 초과한 경우 30일, 3배 초과시 60일을 처분기준에 각각 더하여 처분한다)	제50조 제1항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정지 30일	정지 60일	정지 90일
---	----------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위반행위 발견 시의 조치)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발견한 어업감독 공무원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3조(위반행위 발견 시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공무원----- ----- ----- -----.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를 발견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위반사건 발생보고서(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24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행정청(어업·양식업의 면허·허가 또는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을 하거나 어업신고증명서를 발급한 행정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화, 팩스 등으로 신속하게 통	④ 제2항 및 제3항에 ----- ----- 지체 없이 ----- ----- ----- ----- ----- -----

보하고, 지체 없이 압류한 어업 면허증등과 제2항 각 호의 서류 를 송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 서류 및 제3 항의 위반사건 발생보고서----- -----. 1. ~ 4. (현행과 같음)
---	--